# ●국가보훈처공고 제2022-72호

「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,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「행정절차법」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2년 04월 22일

국가보훈처장

# 「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### 1. 개정이유

현행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는 제대군인 인적자료 요청기관으로 국방부 장관 및 병무청장이 명시되어 있어 이를 반영하기 위해 동 법률 시행령에 병무청장을 추가하도록 하는 한편, 자료 요청 항목 을 구체화하여 자료의 활용도를 높이고자 함

#### 2. 주요내용

# 가. 제대군인 인적자료 요청 기관에 병무청 추가 및 요청 항목 구체화(안 제3조)

- 1) 제대군인 인적자료 요청기관으로 국방부 장관 외에 병무청장을 추가
- 2) 제대군인 인적자료 요청항목으로 성명·군번·병과 외에 각 군별·계급등을 추가하는 등 요청항목 구체화

### 3. 의견제출

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6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(http://o pinion.lawmaking.go.kr)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,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가.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(반대 시 이유 명시)
- 나. 성명(기관·단체의 경우 기관·단체명과 대표자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- 다. 그 밖의 참고 사항 등
- ※ 제출의견 보내실 곳

- 일반우편 : 세종 도움 4로 9

- 전자우편 : jeyyes@korea.kr

- 팩스 : (044) 202 - 5797

### 4. 그 밖의 사항

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처 제대군인정책과(전화 (044) 202 - 5717, 팩스 (044) 202 - 57 97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